#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3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한병도·신영대·조 국

이해식 · 장철민 · 진선미

윤준병 • 이원택 • 강유정

이소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은 기획 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승인 대상인예산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할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인건비를 동결하는 대신 복리후생비를 높여 임금을 상승시킨 편법에 대한 지적 을 받음에 따라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

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 과정의 투명 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법률 제 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중 "확정한다"를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 단 중 "급여성 경비 등"을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서"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8조(예산·결산) ① 한국은행	제98조(예산·결산) ①		
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			
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u>확정</u>	<u>확정하</u>		
<u>한다</u> .	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u>하여야 한다</u> .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②		
중 <u>급여성 경비 등</u> 대통령령으	<u>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u>		
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	<u>서</u>		
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			
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